

의안번호	제 907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11월 10일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7
----------	-----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상식, 연종석, 송미애
윤남진, 원갑희, 이상정
임영은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조성과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충북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북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충북한우의 육성·보호를 위한 주체별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
- 충북한우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충북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혈통관리, 한우개량, 생산기반 확충, 품질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조례안 예고 대상
-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축수산과와 협의함
- 비용추계 : 해당 없음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및 충북한우 브랜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북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북한우”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 및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가축으로 일정한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는 소(쇠소, 흑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
3. “고등등록우”란 지정기관이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소를 말한다.
4. “충북우량암소”란 충북한우 중 지정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암소를 말한다.
5. “충북한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받고 충청북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6. “충북한우 생산자단체”란 충청북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7. “충북한우 브랜드”란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차별화된 한우 생산·유통·판매 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상징체계로 청풍명월 한우 및 시·군 한우 브랜드를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북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북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북한우의 개량 및 육성 지원
2. 충북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지원
3. 충북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항
4. 충북한우의 경쟁력 확보 지원
5. 충북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지원
6. 충북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팀의 구성
7. 충북한우 브랜드의 육성 및 유통 확대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충북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체별 역할)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 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도지사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충북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브랜드에서 제시한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충북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충북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을 말한다)
2. 충북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4.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구매
5. 충북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6.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7.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고급육생산, 유통판매, 소비촉진 및 홍보
8. 생산자단체 및 후계자 육성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혈통관리) ① 도지사는 도에서 생산·사육하는 한우의 혈통을 등록·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북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우개량) 도지사 및 한우농가·생산자단체는 한우개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혈통의 충북한우를 육성하기 위한 씨암소 관리
2. 충북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 별도 관리
3. 충북한우의 개량을 위한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

제9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와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충북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0조(품질의 개선) 도지사는 충북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도지사가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농가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북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북한우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

-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 가. 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나. 체형 측정기·간이 체중 측정기·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 다. 보조기억장치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연산처리장치가 6개 이상의 서버능력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2호]

1. 종축등록기관

축종별	지정기관
한우, 젖소, 육우, 토끼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돼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대한한돈협회
말(제주마 제외)	한국마사회
제주마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2. 종축검정기관

축종별	지정기관
한우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회사 가축개량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젖소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회사 가축개량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육우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돼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대한한돈협회,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닭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대한양계협회
오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한국오리협회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

제17조 【한우 우량암소의 정의 및 목적】 한우 우량암소라 함은 고능력우로써 유전자원 활용의 다각화를 도모하여 개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암소는 우량암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혈통등록 이상 생존암소인 것
2. 후대축 도체성적 도체중 480kg이상, 육질등급 1++중 근내지방도 8, 9번, 등심단면적 110cm²이상, 육량등급 B이상인 것
3. 현장조사결과 결격사유(이모색발현, 흑비경3단계 이상, 외모심사점수 80점 미만)가 없는 것
4. 친자부정 개체가 아닌 것

제18조 【한우 우량암소의 관리】

①한우 우량암소는 매월 선발하며, 선발된 우량암소는 본회의 우량암소 정보 제공 게시판에 게재하고, 분기별 현황을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우량암소의 이용을 장려한다.

②한우 우량암소로 선발된 한우는 별도로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첨부 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사 유

- 「충청북도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해 수반되는 신규 예산 편성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